

제2819호
2021. 4. 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25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고 시

제2021-39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5
제2021-40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6
제2021-41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7
제2021-42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8
제2021-43호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9
제2021-44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10
제2021-45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12

● 공 고

제2021-246호 :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13
제2021-249호 :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20
제2021-251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3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250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을 위하여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도록 일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20.12.22. 공포)이 ‘21.6.23.자로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사항을 정비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조례안 제3조(구성)]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정원	총 5명 중 3명	총 7명 중 5명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3396-4414, FAX : 02-3396-9015, e-mail : tiadiary@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일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5명”을 7명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구성) ① ----- ----- 7명----- ----- -----.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1. 5명-----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② ----- ----- -----.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5명-----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 39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 호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소 재 지
	X(m)	Y(m)	X(m)	Y(m)	
10305	552,000.30	199,027.94	451,694.47	198,957.01	중구 수표동 67-31
10306	552,033.79	199,023.33	451,727.96	198,952.39	중구 수표동 99-1
10307	552,053.96	199,044.77	451,748.14	198,973.81	중구 수표동 65-5
10308	552,056.68	199,078.90	451,750.87	199,007.93	중구 수표동 50-2
10309	551,994.38	199,078.79	451,688.57	199,007.84	중구 수표동 50-1
10310	551,971.74	199,087.97	451,665.93	199,017.03	중구 수표동 50-1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설 치 일		2021. 3. 15.			
표지의 재질		철재			
측량성과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 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 40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02일대 / 5,512.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더센티시티제이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6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21. 4. 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층 수 (지하/지상)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m)	용 도
4,269.40	지하8층 지상20층	58,183.62	52.51	893.37	87.9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 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시 행 자	부담자 및 부담내용
정비 기반시설	도로	756.7	도로	1,015.7	더센티시티제이차 주식회사	시행자 부담설치 후 무상귀속
			녹지	227.8		
합 계	-	756.7	-	1,243.5	-	-

10.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에 비치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 4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40-1번지일대 / 4,061.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더센티시티제이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6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21. 4. 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층 수 (지하/지상)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m)	용 도
3,061.5	지하9층 지상26층	46,323.59	66.32	911.36	89.48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공동주택 432세대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 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시 행 자	부담자 및 부담내용
정비 기반시설	도로	607.9	도로	536.7	더센티시티제이차 주식회사	시행자 부담설치 후 무상귀속
			녹지	463.5		
합 계	-	607.9	-	1,000.2	-	-

10.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에 비치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 42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82-1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길 52-14	2011. 7. 29.	퇴계로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 43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변경된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가길 5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가길 59	2021 . 4. 7.	명동8가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명동길을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 4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붙임 목록	참	고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붙임 목록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1길 27-15	2021.4. 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1길 27-17	2021.4. 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0길 12	2021.4. 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7길 18	2021.4. 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0길 10-19	2021.4. 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0길 10-13	2021.4. 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0길 10-15	2021.4. 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0길 10-17	2021.4. 7	건물 철거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7길 20	2021.4. 7	건물 철거
총 9건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 4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4-5 외1필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1길 27-15	2021 . 4. 7.	다산로21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67-15 일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7길 14	2021. 4. 7.	동호로7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 - 246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6.)로 최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된 우리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와 관련하여, 지역별 맞춤형 환경정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구공고 제2020-785호(2020.11.04.)로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수표동 35-13번지 일대	42,641.6	-	42,641.6	-

2) 지구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을지로3가구역 제9 지구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1,945.6	증) 30.4	1,976.0	-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필지 확정에 따른 제9지구 면적 변경

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945.6	증) 30.4	1,976.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326.1	증) 30.4	356.5	18.0	
	도로	112.2	-	112.2	5.7	
	공원	213.9	증) 30.4	244.3	12.3	
획지	소계	1,619.5	-	1,619.5	82.0	
	획지	1,619.5	-	1,619.5	82.0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필지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945.6	증) 30.4	1,976.0	100.0	
상업 지역	소계	1,945.6	증) 30.4	1,976.0	100.0	
	일반상업지역	1,945.6	증) 30.4	1,976.0	100.0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필지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 반영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수표동 27-1 일대	55,151 (1,976.0)	-	-	1973.8.1. (건고시 제317호)	집단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면적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	13 (1.5)	집산 도로	177 (41.7)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 도로	공공청사	'16.10.6	
기정	소로	1	b	10 (1.0)	집산 도로	307 (36.2)	을지로3가 95-5	수표동 56-11	일반 도로	-	'16.10.6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원	역사공원	을지로2가 101-43일대	1,551.0 (213.9)	증) - (증) 30.4)	1,551.0 (244.3)	'16.10.6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면적임

■ 공원 변경 사유

구분	시설의 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명칭	세분류			
변경	공원	역사공원	■ 공원면적 : 1,551.0m² ■ 부담면적 : 213.9m²→244.3m² (증 30.4m²)	■ 당초 부담비율 대비 확보 면적에서 금회 필지단위 확보에 따른 제9지구 내 공원 면적 변경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 변경

구분			시행 면적 (m ²)	대지 면적 (m ²)	정비기반 시설면적 (m ²)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공공용지 (m ²)	대차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m ²)	순부담 면적 (m ²)	순부담율 (%)	비 고
사업 시행 지구	9지구	기정	1,945.6	1,619.5	326.1	-	-	326.1	16.8	3지구 제외시 평균 순부담률 16.8%
		변경	1,976.0	1,619.5	356.5	-	-	356.5	18.0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확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제9지구	소 계			326.1	제9지구	소 계			356.5
	을지로 3가	5-1	도로	26.7		을지로 3가	5-1	도로	26.7
		5-2		11.5			5-2		11.5
		5-3		3.7			5-3		3.7
		5-4		25.1			5-4		25.1
		5-18		9.0			5-18		9.0
		5-19		8.6			5-19		8.6
		5-21		15.1			5-21		15.1
		5-31		4.4			5-31		4.4
		5-32		3.0			5-32		3.0
		5-33		5.1			5-33		5.1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213.9	을지로 2가		공동 분담	101-21 101-43	공원	109.1 135.2

※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국·공유지 매입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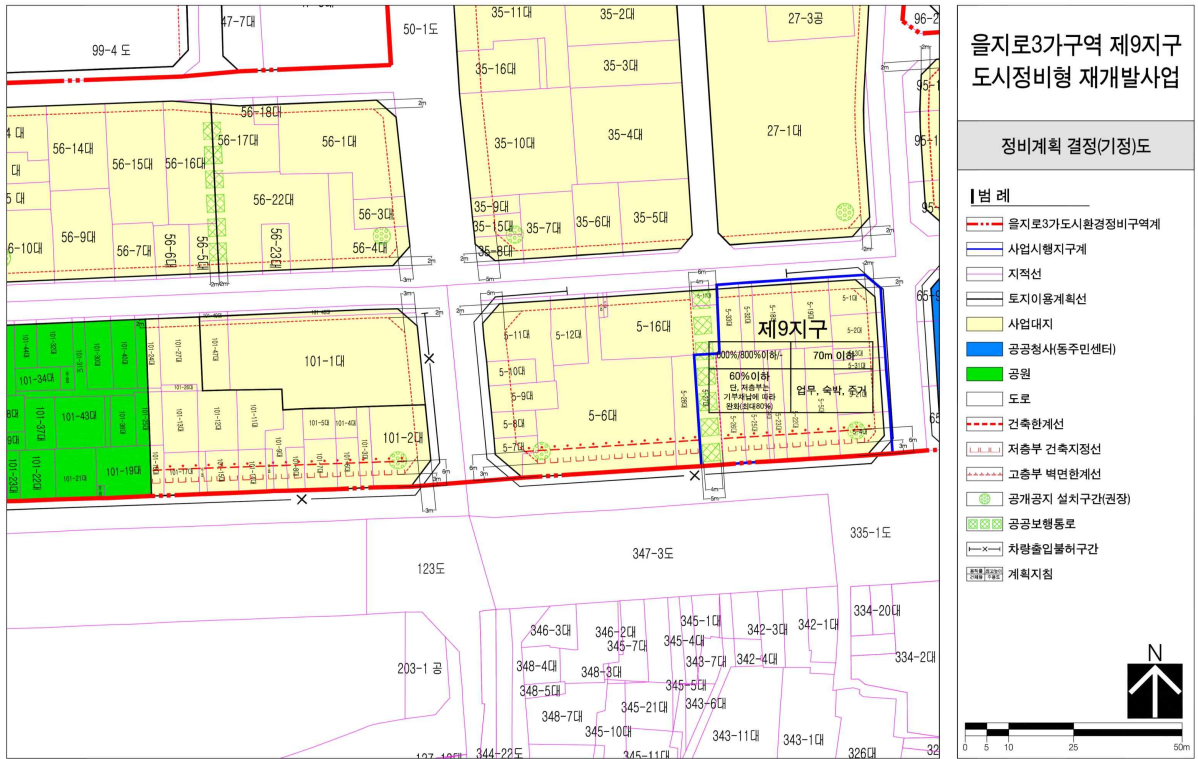
구 분	위 치		지목	면 적 (㎡)		관리청	비고
				공부(공유지분)	편입(공유지분)		
9지구	을지로 3가	5-24	도	23.1	23.1	국(국토교통부)	

주) 을지로3가 5-24번지는 지목상 도로이나,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됨
5) 건축물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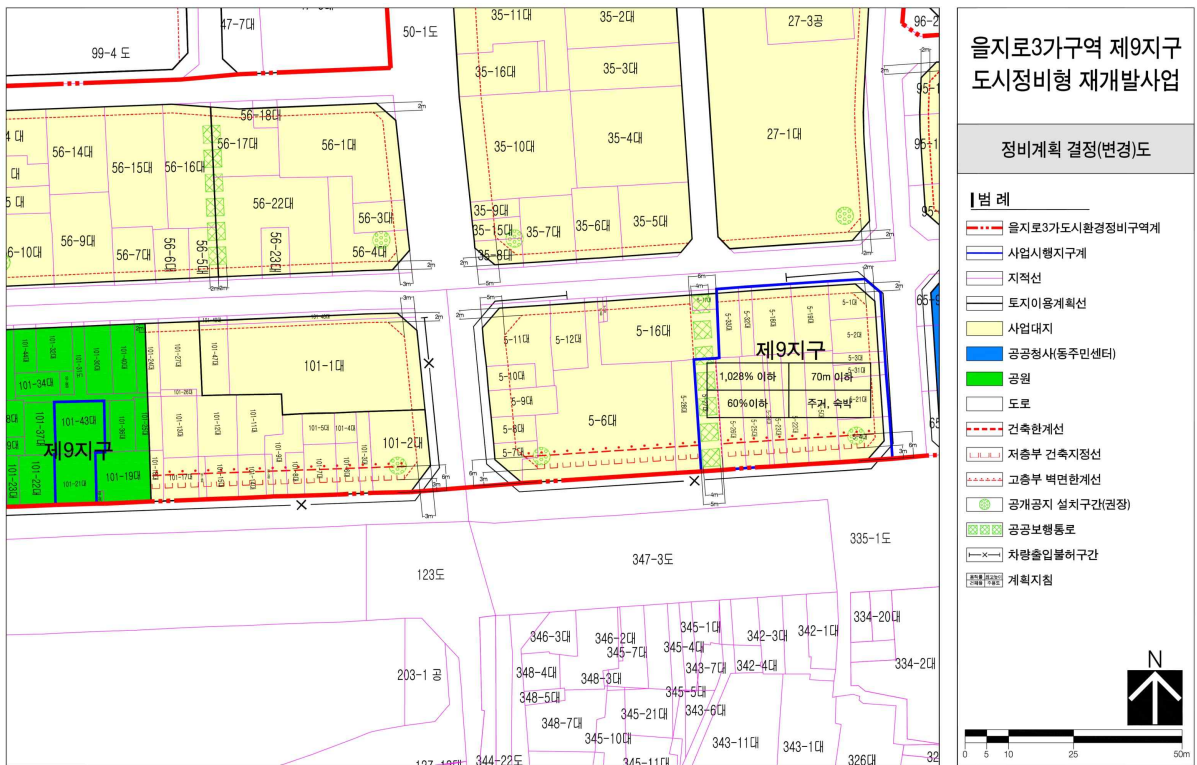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을지로3가 제9지구	1,945.6	-	1,619.5	을지로3가 5-1번지 일대	업무, 숙박, 주거	60 이하 단, 저층부는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최대 80%)	600/ 800/-	70m이하	-	
변경		1,976.0	-	1,619.5		주거, 숙박	60 이하	1,028	70m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상업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가능)(서고 제2019-343호) ② 주택공급계획 : 108세대 ③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기준) - 전용면적 50㎡이하 주택비율 100% - 공공주택 전체 세대수의 60%이상 전용 40㎡이하 확보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이하일 것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일반분양		40㎡이하	34세대	31.48%	-	
							50㎡이하	70세대	64.82%	-	
					주거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40㎡이하	2세대	1.85	임대주택	
							50㎡이하	2세대	1.85		
합 계			108세대	100.0%	-						
심미완화사항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00% 적용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100%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kWh/㎡·y)미만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7%이상(주거)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미술관 도입 시		4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가로활성화용도 도입 시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28.93%						
					공공시설		산식 = 1.3α x (기준용적률+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 1.3 x (356.5㎡/1,619.5㎡) x (600%+200%) = 228.93% 적용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①(600%) + ②(200%) + ③(228.93%) = 1,028.93% → 1,028%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은 아래와 같이 지정,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단, 제9지구의 제8지구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5m)은 공공보행통로(4m)로 조성						
					구분	건축선 지정내용				비고	
제9지구		○ 대로2-3(30m)변 저층부 건축지정선(폭3m) 지정 ○ 대로2-3(30m)변 고층부 벽면한계선(폭6m) 지정 ○ 중로3-3(13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 소로1-b(10m)변 건축한계선(폭2m) 지정									

6) 정비계획 변경(안)도

〈정비계획결정도(기정)〉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다. 기 타

- 1) 공람기간 : 2021.04.07. ~ 2021.05.07.(30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6층(☎02-3396-5774)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 - 249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 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와 관련하여,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 · 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2021.4.7.~ 2021.5.7.)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마포로5구역	중구 중림동, 서대문구 충정로3가 일대	60,055.7	증) 1,677	61,732.7	지구별 공부상 면적 변경

나. 지구 지정(변경) 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마포로5구역 9-1지구	중구 순화동 6-11번지 일대	1,936.3	감) 344.7	1,591.6	• 사업지구 경계 조정 ※순화구역 제1-2지구 정비구역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9-334호)

2. 정비계획 결정(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m ²)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936.3	감) 344.7	1,591.6	100.0	
정비기반 시설	320.3	감) 320.3	-	-	
획 지	1,616.0	감) 24.4	1,591.6	100.0	

※ 순화구역 1-2지구 정비구역 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4호)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명 칭	면적(m ²)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616.0	감) 24.4	1,591.6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616.0	감) 24.4	1,591.6	100.0	

※ 금회 지구계 변경의 면적조정에 의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 없음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서대문~마포	449.4	-	-

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1) 정비기반시설의 부담 계획

구역명	시행면적(m ²)	대지면적(m ²)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m ²)	기존국공유지(무상양도)(m ²)	부담률(%)
마포로5구역 9-1지구	1,591.6	1,591.6	건축물 환산면적 + 토지지분면적 = 208.96m ² + 124.11m ² = 333.07m ²	-	○ 부담률 : 20.93% (기결정 부담률 16.54%) ○ 부담률산식 = 333.07/1,591.6m ² = 20.93%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 정비기반시설 부담량 : 333.07m²(20.93%) / 기결정 부담량 320.30m²(부담률 16.54%)이상 계획

① 정비기반시설(소로1-23호선) 미확장구간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예치

※ 소로1-23호선 공사비 및 보상비는 정비기반시설 부담량 및 인센티브에서 제외

② 지상3층부 건축물(도입시설:도서관) 기부채납 면적 : 333.07m²(실제 기부채납 면적 418.95m²)

- 토지지분 124.11m², 건축물 환산면적 294.84m²(전용 856.76m²+공용 859.97m²)

- 도입시설(지분 및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중구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 조정될 수 있으며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

③ 획지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 -

라. 건축물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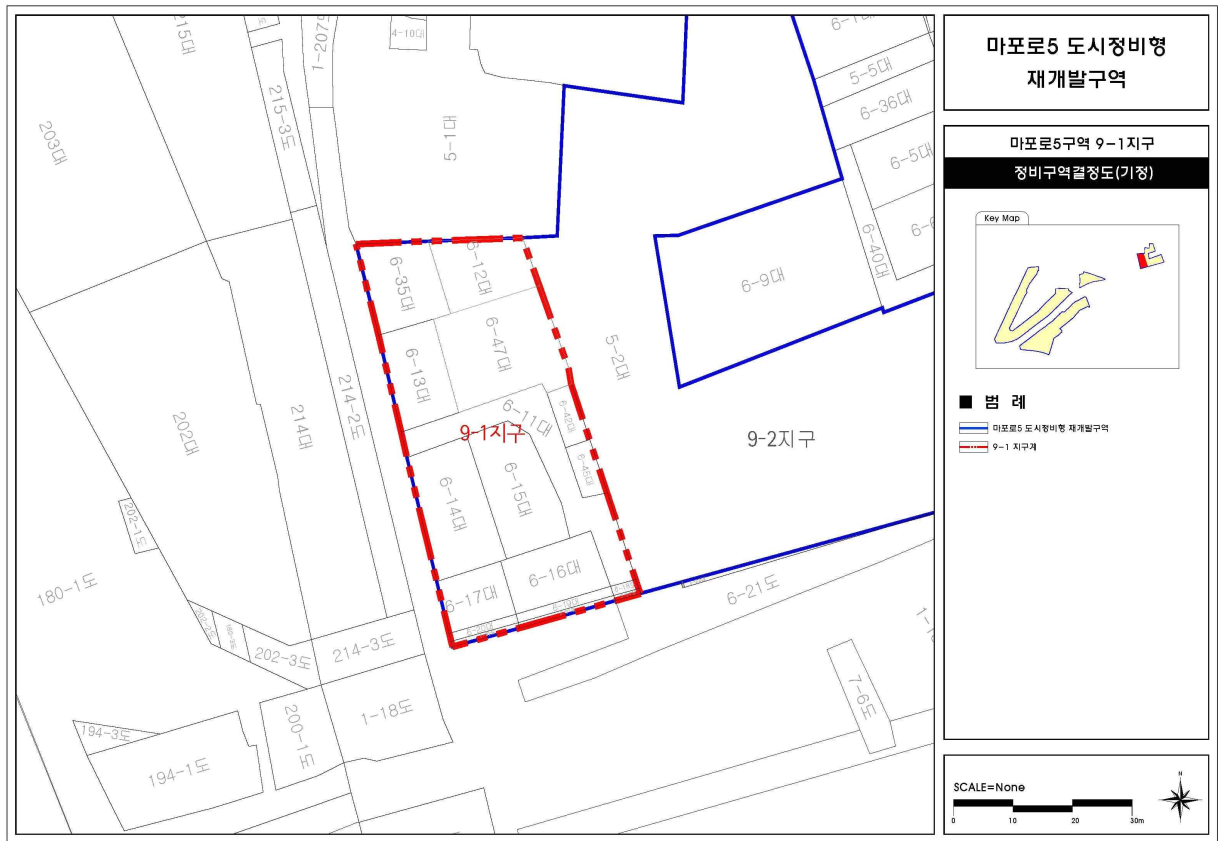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적(m ²)	명칭	면적(m ²)						
기정	마포로5구역	1,936.3	획지	1,616.0	중구 순화동 6-12 번지 일대	업무	60이하	α	70이하	-
변경	9-1지구	1,591.6	획지	1,591.6	중구 순화동 6-11 번지 일대	주거	70이하	1,030이하	7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세 대 수(세대)	비 율(%)	비고	
					계		198	100.0		
					일반분양	48	32	16.2		
						49	108	54.5		
						소 계	140	70.7		
					공공임대	33	36	18.2		
						36	18	9.1		
						48	4	2.0		
						소 계	58	29.3		

심의 완화 사항	건폐율	○ 지역 특성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 저층부(3층 이하) 70% 적용 - 고층부(4층 이상) 60% 적용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완화량 : 200%							
		목적	인센티브대상	요 건		인센티브		적용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 그린1등급(우수)		기준등급 준수 시 최대 100%		100%	최대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 240 (kWh/㎡·y)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 11%이상(비주거), 7%이상(주거)					
		생활 SOC 문화 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 도서관, 주차장,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 아동시설, 보육시 설, 일자리창출공간 ○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 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부여	최대 50%	20%	
		주거 안정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일 반민간임대 주택 도입 (전 용 60㎡ 이하, 전체연면적 의 20% 이상 도입시)		정량 부여	최대 50%	50%	
	보행 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 로활성화용도 도입 시		정량 부여	최대 30%	30%		
	③ 상한용적률 완화량 : 236.05% ⇒ 230% 적용								
정비기반 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산식 = 허용용적률 × [1.3 × (α토지 + α건축물)] ○ α토지 = 건축물 토지지분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24.11㎡ / (1,591.60㎡ - 124.11㎡) = 0.0846 ○ α건축물 = 건축물 환산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08.96㎡ / (1,591.60㎡ - 124.11㎡) = 0.1424 = 800% × [1.3 × (0.0846 + 0.1424)] = 236.0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서소문로변 : 건축한계선 3m ○ 서소문로9길 변 : 건축한계선 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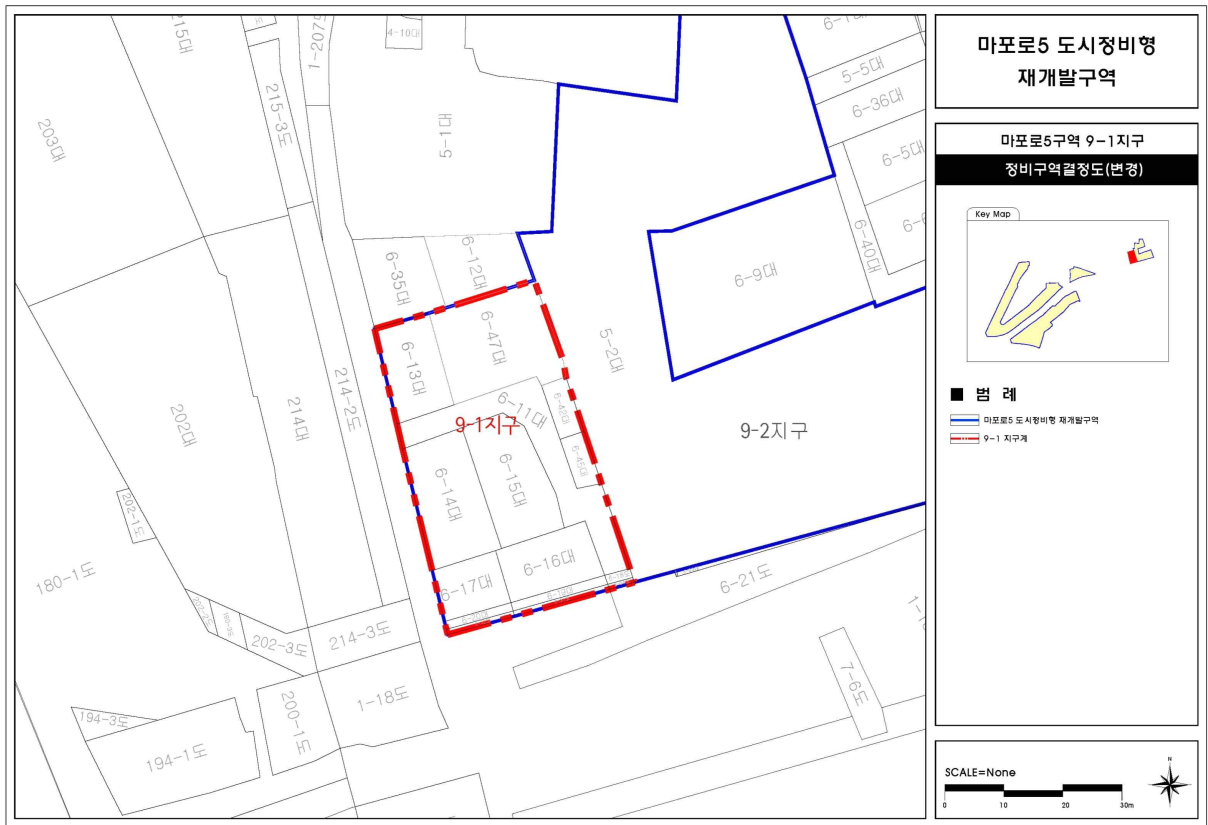
마. 기 타

- 1) 공람기간 : 2021. 4. 7. ~ 2021. 5. 7. (30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2)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문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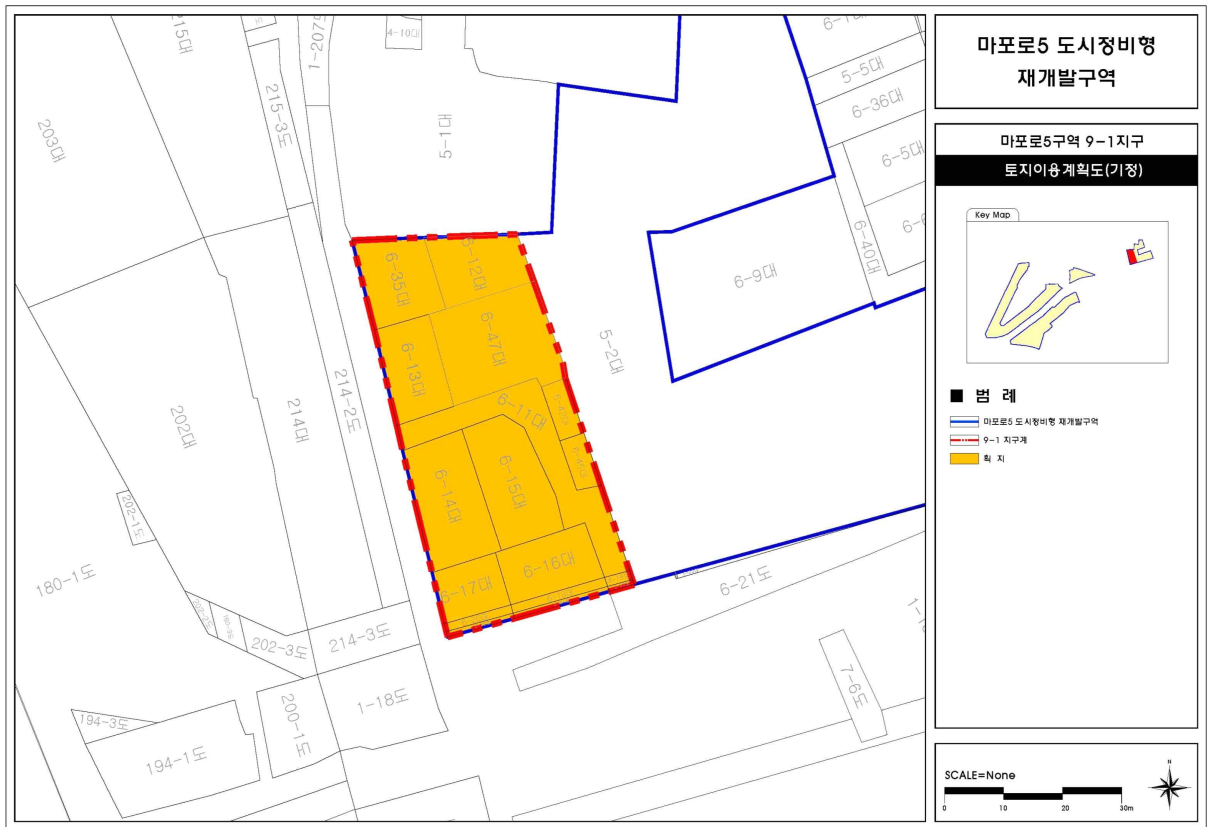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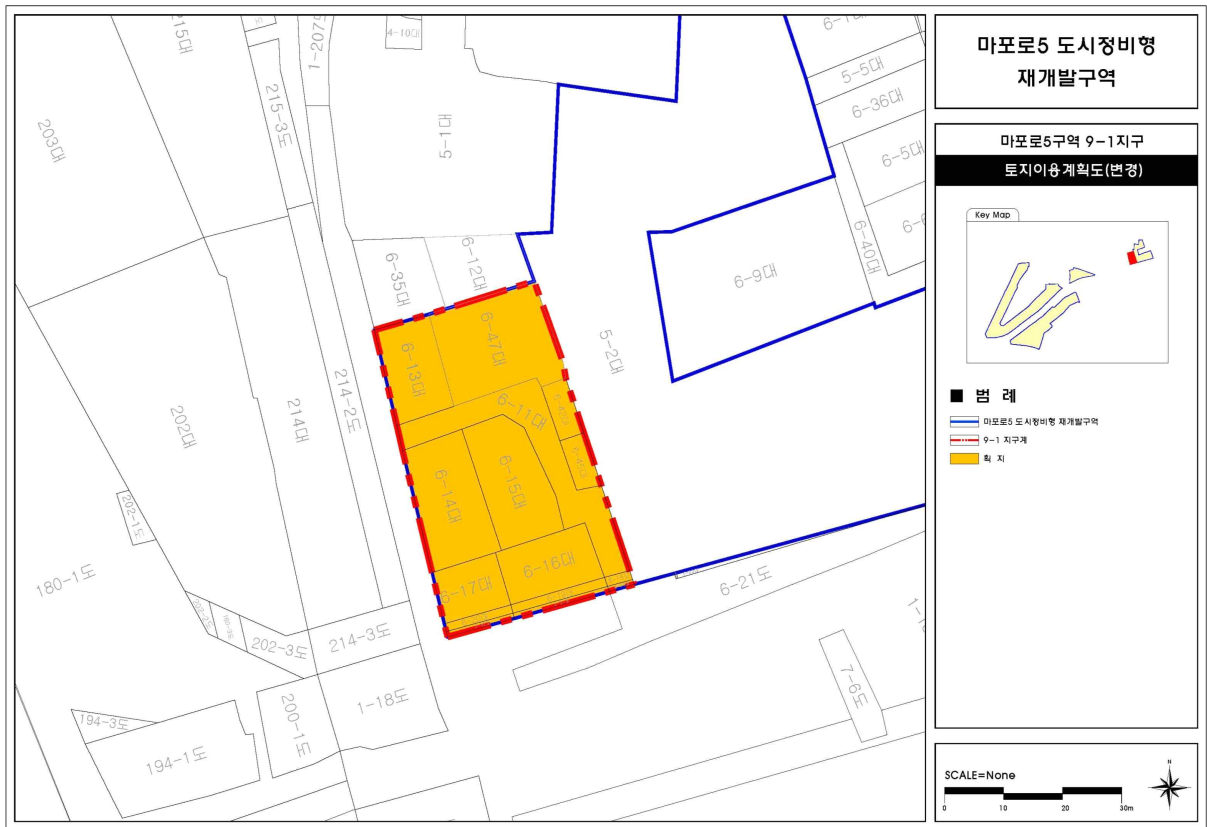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토지이용계획도(기정)〉



〈토지이용계획도(변경)〉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마포로5구역 9-1지구
용도지역 · 지구결정도(기정)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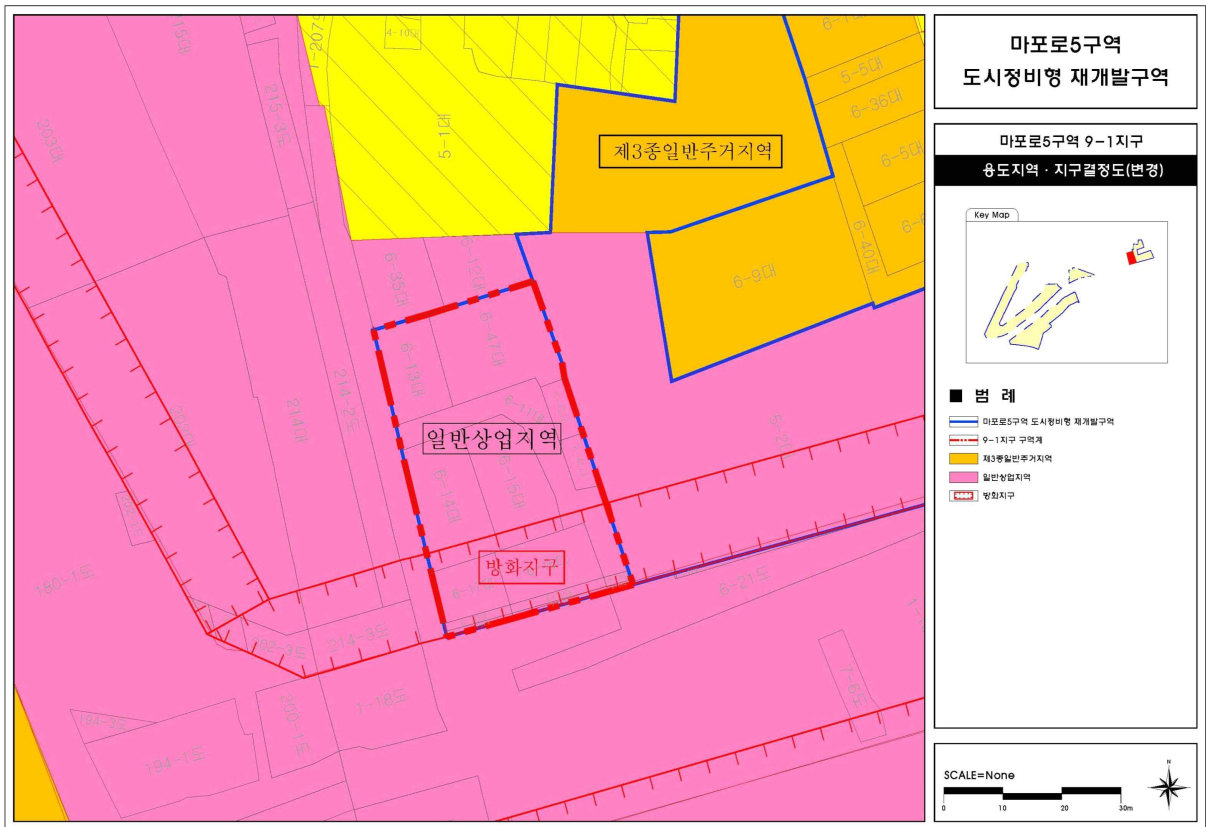
■ 범례

-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9-1 지구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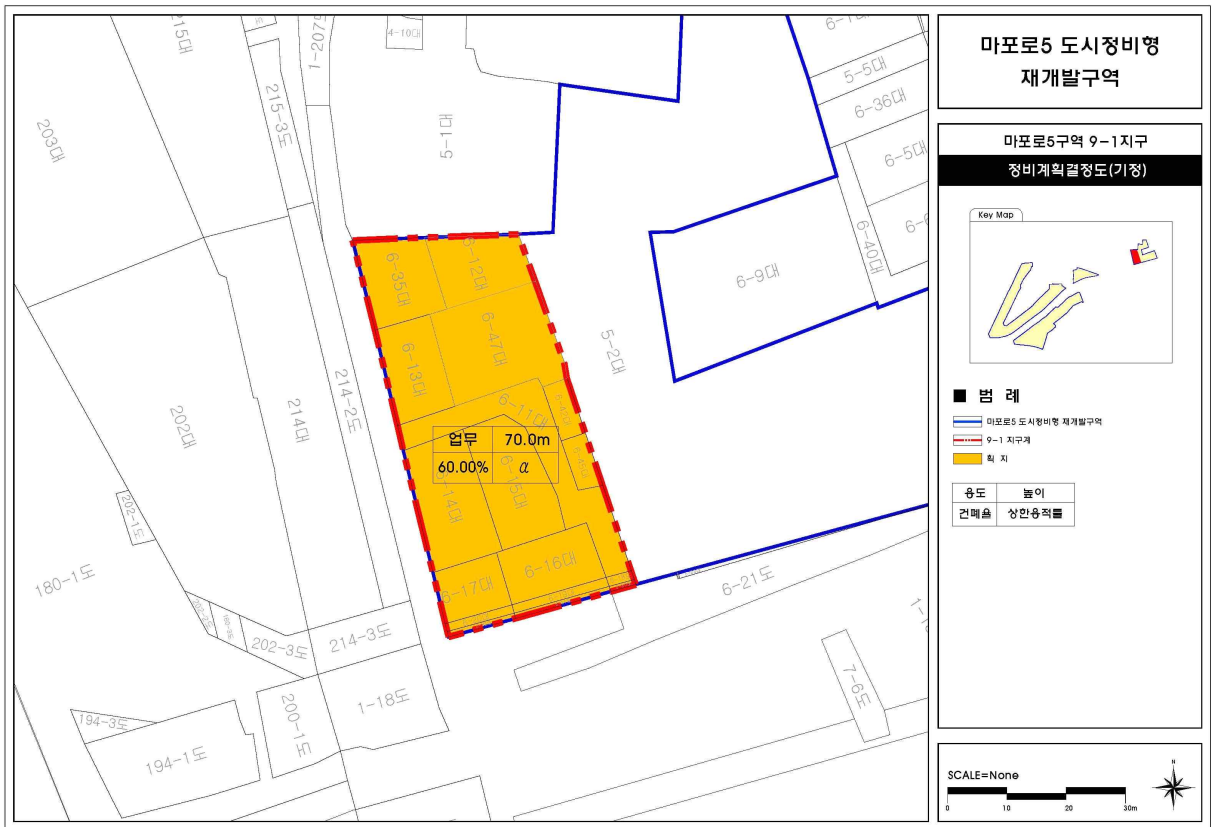
SCALE=None

0 10 20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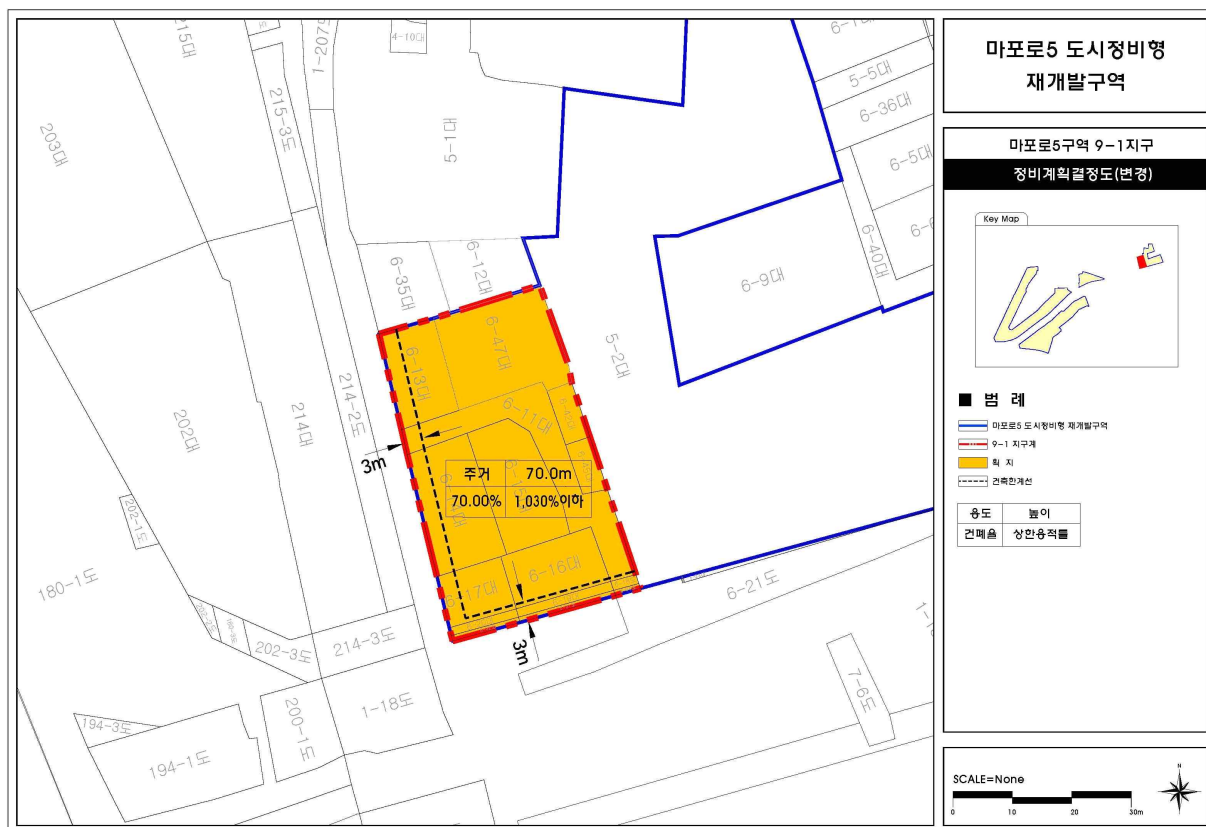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 - 25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제2014-119호(2014.3.27.) 및 제2019-185호(2019.06.0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11호(2017.11.2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위치및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2 일대 / 5,621.57㎡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창하, 이창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20층)
- 라.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54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7.11.17.

2. 공람개요

- 가. 공고기간 : 2021.04.07. ~ 2021.04.21.(14일간)
-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3)
- 다. 주요 변경내용 : 사업시행자 및 세대수 변경
 - 시행자 변경 : 더유니스타제삼차(주) → 우리자산신탁(주)
 - 세대수 변경 : 업무시설(오피스텔) 420호 → 366호
-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 마. 공고방법 : 구보 게재

3.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